

## 건설폐기물 처리 [ ] 계획서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	------	------	------	-----------------------

신고인	상호(명칭)	서울특별시	발주자와의 관계	발 주 자
	성명(대표자)	서울특별시시장	생년월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2133-2296)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공사명	남산1호터널 앞 버스정류소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 사 기 간	2017-12-11 ~ 2018-11-30
	공사(배출)현장주소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89 일대 (전화번호 : 02-2133-2296)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발주자	상호(명칭)	서울특별시	대 표 자	서울특별시시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2133-2296)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발생 주기	처리 구분	운반차	운반량 (톤)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
불연성	40-01-01	페콘크리트	303	수시	위탁	㈜수도권환경	303	㈜수도권환경	중간처리 (파쇄 / 분쇄)	303
가연성 불연성 혼합	40-04-14	혼합건설폐기물	1.26	수시	위탁	㈜수도권환경	1.26	㈜수도권환경	중간처리 (파쇄 / 분쇄)	1.26

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장비선별 후 운반차량 배출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발생즉시 위탁처리

###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 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등 생산량(톤)	사용량 (톤)	사용용도
변경사항	변경 전	공사기간 : 2017.12.11. ~ 2018.06.30.				
	변경 후	공사기간 : 2017.12.11. ~ 2018.11.30.				
변경사유	공사기간 연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9조제1항  
[√] 제9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2018년 09월 일  
신고인 서울특별시시장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로 없음
------	---	-----------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 폐기물 수탁확인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위탁자	상호(명칭)	서울특별시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울특별시장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2133-2296)				
	위탁 폐기물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40-01-01	고상	303			
40-04-14	고상	1.26				

수탁자	상호(명칭)	㈜수도권환경		사업자등록번호	109-81-43760	
	성명(대표자)	차석구		생년월일	1960. 04. 28.	
	주소(사업장)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174(백석동) (전화번호:032-567-0181~4)				
	업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최종 변경일)		허가(신고수리)기관		
중간처리허가번호 제99-01호	중간처리 : 1999년 03월 09일(2017년 02월 0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수집운반허가번호 제 2005-12호	수집운반 : 2005년 11월 08일(2017년 05월 18일)					

수탁 처리 능력 확인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공제조합가입(√), 보증보험가입(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허가 또는 신고 업종	영업대상폐기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수집·운반차량	
				종류	용량(톤/시간)	용량(㎡)	매립기간	규모(톤)	수량(대)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15	1	
							24	54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파쇄	600		15	3	
	수탁자(최종처분업자 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톤)								
	허용보관량	현재 폐기물 보관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전체 폐기물 보관량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96,000	42,314	3,300	0.86	45,614.86	48,000			
수탁자(최종처분업자)의 처분능력(단위: ㎡)									
매립 허가용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량	남은 매립용량	수탁 가능 여부					
				가능					

수탁 확인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탁(예정)량 (톤/년)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년)
			종류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톤/일)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2018년 09월 일

위탁자(배출자): 서울특별시장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 수도권환경 차석구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수탁자 첨부서류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의 (변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